

청년 경기

2018

경기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목차

1. 기본현황	1
2. 적용대상분야	3
3. 부정청탁분야	9
4. 금품등 수수분야	17
4-1. 음식물 수수사례	19
4-2. 선물 수수사례	31
4-3. 경조사 수수사례	39
5. 외부강의 사례	49
6. 기타 사례	61
【부록】 법령(2단비교표)	69
【부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권익위)	97

경기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 기본현황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 청탁금지법 제정경위

- ('11.6.14) 국무회의 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15.3.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6.7.28)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16.9.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18.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경기도 청탁문화개선팀 운영 현황

- ('16. 8. 2) 「청탁금지법」시행 대비 '경기도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전국 최초)
- ('16. 8.23)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전담 T/F 구성
- ('16. 9.26) 경기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본청)
- ('16.10.31) 청탁금지법 신고지침 및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
- ('16.11. 1) 조사담당관실 내 '청탁문화개선팀' 신설
- ('16.12. 5) 경기도청렴자문위원회 위촉(광역지자체 최초 설치)
- ('17.10.16) 경기도청렴자문위원회 운영(자문 2건)

□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운영 현황 (2018. 4. 30. 기준)

구 분	계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기타
합 계	3,269	241	105	2,525	199	199
온라인	204	7	11	161	17	8
오프라인	3,065	234	94	2,364	182	191

2. 적용대상 분야

사례1

모든 위원회 위원 법 적용대상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가?

A. 그렇지 않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규칙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사·훈령·지침 등도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준용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사례2 사외이사 법 적용대상

Q. 공직유관단체 이사회의 민간 사외이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A. 적용 대상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대상자에 해당되며, 사외이사도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자임.

해설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고 있음. 임원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는 내부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나목(공직자등 정의)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례3 무기계약 · 기간제 근로자 법 적용대상

Q.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가 법 적용 대상인가?

A. 법 적용 대상이 아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니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음.

해설

-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임.
-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권익위원회의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16.10.31.)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공직자등 정의)**
 -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관련규칙】**
 - ☞ **경기도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적용범위)**
 - 도 소속 공무원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및 청원경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

사례4

공사감리자 법 적용대상

Q. 도 ○○과에서 용역을 수주하여 공사감독 권한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민간 감리업체 공사감리자가 법 적용 대상인가?

A. **법 적용 대상임.**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해설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이에 포함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부정청탁 분야

사례1 민원처리 요구

Q.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 처리 진행상태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빨리 처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가?

A. 부정청탁이 아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해설

- 건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나(법 제5조제1항제1호), 건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 예외사항**에 해당
- 단,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부정청탁 예외사항)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사례2 자사제품 홍보

Q. 민간기업체에서 관공서 등에 방문하여 자기업체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

A. **부정청탁이 아님.**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해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가지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 민간기업체에서 관공서 등에 방문하여 자사 제품 홍보를 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제공은 금품등 수수 예외사항에 해당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부정청탁 금지 행위유형)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tilt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tilt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tilt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확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사례3 직접 부정청탁

Q.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는가?

A.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부정청탁을 한 행위는 금지되는 사항이므로 공직자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임.

해설

- 청탁금지법에서는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는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임.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 **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 **법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례4 동일한 부정청탁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 **징계처분 대상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해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제2항(부정청탁의 신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5 선출직 공직자등

Q. 도의원이 지역관내 연두방문 시 주민A가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도의원이 주민의 고충을 전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A. **부정청탁이 아님.**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해설

-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지방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법 적용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법 제5조제2항제3호, 청탁금지 예외사유)

〈 참고-지방공무원법 〉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사례6 실행되지 않은 부정청탁

Q. 민간인A가 공직자B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했지만 공직자B가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법 위반임.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해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에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됨.

<부정청탁 흐름도 및 처벌>



<부정청탁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접 청탁 : 제재대상 제외

<연결고리>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무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담당 공직자등>

- 직무 수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절 표시 : 징계 및 벌칙 제외

사례7 상급자가 지시한 부정청탁

Q. 농지전용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oo과 과장A가 민원인B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C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처벌은?

A. 업무지시를 한 과장A 및 직무를 수행한 하급 공직자C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

해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도 포함됨(권익위 직종별 매뉴얼)
 - 따라서,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직무를 수행한 하급 공직자C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를 한 과장A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수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해서는 안 됨.
 - ☞ **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직무수행 금지
 - ☞ **법 제22조제2항제1호(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금품등 수수 분야

① 음식물 수수 사례

사례1 음식물의 개념 - 주류, 음료 등

Q. 도청 사업부서 A과장은 직무관련자인 산하 공공기관 B직원과 업무협의 후에 식사를 하면서 주류는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초과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A과장의 주장은 옳은가?

A. 옳지 않음. 음식물 가액 산정 시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포함됨.

해설

- 음식물이라 함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됨.
 - 따라서 음식물 가액 산정 시 주류와 음료수 등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경우 포함된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2

돌잔치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Q. 도청 직원 A주무관은 자녀 돌잔치를 열었는데 참석한 손님 중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A. **식사제공 가능함.**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 교통 등 제공하는 경우 참석자 중 직무관련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로 보아 제공 가능

해설

- 돌잔치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범위(3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예외 사유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3 식사 후 결제방법

Q. 도청 A과장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인 중앙부처 B과장과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A과장이 결제하고 2만원은 B과장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음식을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

- B과장이 받은 금액이 3만원이므로 금품등 수수의 예외 사유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위반되지 않음. 즉,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공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제공할 경우에는 가능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4 동일 기관 상 · 하급자 간의 관계

Q. 도청 내 ○○부서 소속 A주무관은 평소 식사 등을 많이 제공하였던 담당팀장B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담당팀장B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한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다만, 하급자와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가액기준(3만원)내에서 식사제공이 가능함.

해설

- 같은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인사·감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라도 제공할 수 없음.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됨.

※ (참고) 공공기관 내 상 · 하급자 직무관련성

-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 인정됨

사례5 위원회 위원에게 식사제공

Q. 도청 ○○과에서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통상적인 회의 종료 후 ○○과장이 공무수행시인 또는 공직자인 위원들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A. **식사제공 가능함.**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함.

해설

- 법령(조례·규칙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라는 목적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라면 가능함.

사례6 시군 · 산하기관과의 간담회

Q. (1) 도 소속 산하기관 직원이 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협의 목적으로 도청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할 경우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2) 업무협의 후 시 · 군 공직자가 도 공직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가?

A. **식사제공 가능함.**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은 가능함.

해설

- 경기도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업무 협의 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군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道 공직자 행동기준, 조사담당관-15460 / '16.10.28.)
 - 다만, 특정 청탁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액기준을 초과한** 식사제공은 **불가함**.

사례7

공식행사에서 식사제공

Q. 도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공식적인 국제회의 행사 후 가액범위를 넘어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공식 행사일 경우 법 위반이 아님.**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단, 계획일정과 다르게 일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공식적인 행사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②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③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 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④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인 제공** :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사례8 공식행사에서 주요인사 식사 차등 제공

Q.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A. 차등 제공 가능함.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불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해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이고 통상적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교통, 숙박의 경우 가액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사례9 친구이면서 직무관련자

Q.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공직자 A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고등학교 동창 민간인B가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 경우 저녁식사 금액 10만원을 민간인B가 계산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법 위반에 해당됨.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현재 건축허가 처리가 진행중이므로 가액범위 일지라도 식사제공을 받을 수 없음.

해설

- 청탁금지법에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보다 직무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사이일지라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허가 신청자가 식사를 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가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식사 등 접대가 허용되지 않음.

사례10 음식물과 기념품 · 선물 제공

Q. 언론사별로 매월 시군을 둘며 정례회를 하고 있다. 이 때 A시 언론관련 부서에서 식사대금,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A.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하 식사 제공은 허용됨.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이라면 제공이 가능함.

해설

- 일반적으로 **지자체 언론관련 부서와 언론인**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례회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함.
-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또는 기념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 및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기념품(홍보용품) 판단기준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함

* 가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2 선물 수수 사례

사례1 승진 · 인사이동 시 선물제공

Q.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청 A팀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도청 B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하자, 축하의 의미로 7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려고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2) 도청 △△부서에서 K주무관은 같은팀 주무관J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자, J가 새로이 발령받는 부서 직원들에게 후행 떡을 제공하려고 한다. 법 위반인지?

A. (1)(2) 법 위반 아님.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되나, 농수산물 ·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 가능함.

해설

-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단, 농수산물 · 가공품 10만원이하),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단, 화환 · 조화 10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됨.
 ※ 선물에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 초과한 제품만 가능

사례2 각출하여 선물제공

Q.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군 공무원 A, B가 평소 친분이 있는 도 공무원 C의 승진에 맞춰 5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 상당에 선물(지갑)을 주고자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A. **법 위반임.** 각자 가액범위 내의 금액을 각출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기액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됨.

해설

- C는 1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대상**이 됨.
- 또한, A, B는 각자 가액범위를 준수하였지만, 둘이 합하여 기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C에게 제공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것이므로 **A, B 모두 1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됨.**(각자 **10만원의 2~5배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사례3 상품권(유가증권) 선물제공

Q. 직무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A. 법 위반임.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됨.

해설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 하므로 선물에서 제외('18.1.17 시행령 별표 1 개정)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상품권, 공연티켓, 영화표,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
 -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4

회칙에 근거한 금품등 제공

Q. 도청 乙팀장은 산악 동호회 모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공직자 등이 동창회 등 모임에서 회칙에 따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됨.

해설

- 동창회 등의 회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제5호 각종 단체의 요건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사례5 MOU 체결 시 선물교환

Q. 민간기업 대표 J는 업무관련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장 K와 선물을 교환하려는데 가능한가?

A.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교환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가능함.

해설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 가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 아님.(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판단기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선물 가액이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일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 지자체장 K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업 대표 J으로부터 5만원을 넘는 기념품을 받는다면 K와 J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제8조제2항)
※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함
- 선물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지자체장 K가 기업 대표 J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다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 J와 K 모두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됨.(제8조제1항)

사례6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선물

Q. K공공기관 대표 A는 독일에 있는 B회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8만원 상당의 B회사 제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A. **받을 수 있음.** 다른 법령 · 기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단, 미국화폐 기준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됨.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나 국내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소속 기관장에 신고후 인도하도록 규정(국고귀속)되어있음.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선물의 금액이 8만원이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음.
- **【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사례7 감사패 등 제공

Q. 현직에 있는 도의원甲이 자신의 지역구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 아님. 감사패, 감사장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어야 함.

해설

- 감사패(공로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8 선물의 반환

Q. R시청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A는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관련업무가 진행 중이지 않을 때 평소 잘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로부터 생일 기념으로 7만원 상당의 향수를 받은 경우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7만원 상당 선물 전부 반환하여야 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만 제공받을 수 있음.

해설

- 담당공무원 A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가능하나 5만원 초과 선물 수수는 불가능 함.
- 따라서 담당공무원 A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2만원 부분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단, 경조사일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만 반환하면 됨.

3 경조사 수수 사례

사례1 경조사비 기준 초과 제공

Q. 도청 ○○과 B주무관이 결혼을 하는데 ○○과 A과장이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가?

A. 제공 가능함.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가액기준 초과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함.

해설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상급자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공 가능함.
- 예를 들어,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5만원)제공 가능
- 다만,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2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 제공

Q. 도청 ○○과장 A가 근무평정 기간에 부친상을 당한 경우 ○○과 직원들이 ○○과장 A에게 부의금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법 위반이 아님.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평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액기준 내(5만원)에서 허용

해설

-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기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3 조의금과 화환 경조사비 제공

Q. 설계용역사 직원 민간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도청소속 공무원 K주무관 부친상에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 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이내에서 허용

해설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음.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됨.
 - 축의금·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축의금·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은 허용되나, 축의금·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사례4 배우자의 경조사비 수수금지

Q. 도청 직원 A주무관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20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4항) 배우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은 제재 사항이 아님.

해설

-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직원에게 선물,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

사례5 친구 또는 친척이 제공하는 축의금

Q. 道 ○○본부 A주무관이 친구 또는 친척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받은 경우 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가능함.

해설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므로, 친구가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법 제재대상이 아님. 아울러,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100만원 초과하여 수수 가능※ 직무관련성이 있는 친구라면 가액기준(축의금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제4호(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
- 공직자등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미 해당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사례6 동호회에서 경조사비 초과 제공

Q. 도청 직원 A주무관이 부친상을 당한 경우에 A주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동창회에서 회칙에 따라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가?

A. 지급 가능함.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됨.

해설

-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 가능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직자등과 관련된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회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사례7 시·군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 수수

Q. 도청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A에게 해당기간 중에 시·군 등 소속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를 제공 할 수 있는가?

A. **제공이 불가능 함.**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법 제8조제2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이 불가함.

해설

- 인사·감사 등 대상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사례8 경조사 범위

Q.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결혼 : 본인 및 직계존·비속, 조의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해설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9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Q. 도청 B주무관이 본인 결혼식에서 직장동료 K로부터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가?

A. **초과금액 만 반환하면 됨.**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10만원)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해설

○ 권익위에서는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조사비 반환범위에 대하여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후에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 도출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5. 외부강의 사례

사례1 사전 신고없이 외부강의를 실시한 경우

Q. 도청 ○○과 A사무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향상 정책관련 외부강의를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없이 진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법 위반임.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해설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함.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아님.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신고
-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사례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Q. 도청 ○○과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2시간/1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A. 최대 60만원 수령 가능. 도청 ○○과장은 1시간 기준 상한액(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총 외부강의료 상한액은 150/100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산출근거(60만원) : 1시간 기준(40만원) + 1시간 초과(40만원*50/100)

해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사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1시간 기준) : 40만원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3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Q. 도청 ○○과 사무관이 외부강의 1시간을 한 후에 해당기관 제공자로 부터 50만원을 수령하고,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조치를 안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법 위반임. 공무원의 경우 1시간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수령 가능함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해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2일이내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초과사례금 반환 통지를 받은 경우 자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 ☞ 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4

연주 · 공연

Q. 도청 ○○과 주무관은 기타 실력이 출중하여 본인이 주거하는 ○○시청 주관으로 연말 음악회에 개인적으로 기타공연을 했을 경우 이때도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A. **외부강의에 미포함.** 외부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회의형태 이어야 함.

해설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써,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외부강의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법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한 것을 의미함.**

사례5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Q. 道 ○○본부 A사무관이 B시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으로 참석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A. **미포함**. 외부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 이어야 함.

해설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외부강의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법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

사례6 휴직 중 외부강의

Q. 도청 직원 A주무관은 육아휴직 중 B시 ○○산하기관에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외부강의 신고해야 함.** A주무관이 육아휴직 기간일지라도 공직자 신분임으로 외부강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해설

-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시행령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따라 신고 및 반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제3항**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신고
 -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사례7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석

Q. ○○A과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건축기사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A. **외부강의에 미포함.** 시험출제위원으로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것은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는 회의형태가 아님.

해설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외부강의 해당되지 않음.
- **【외부강의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 법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

사례8 외부강의 사례금 연간 상한액

Q. ○○A과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직무관련 외부강의 요청이 빈번하여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A. 법 위반이 아님.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연간 상한액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해설

○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특별규정이고 법 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경기도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

☞ 법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공직자등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1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칙】 경기도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9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Q. 외부강의등을 한 도청 A사무관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A.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해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별표2)

2. 적용기준

- 라.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10 각종 회의 진행시

Q. A사무관이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A. **외부강의에 포함됨.** A사무관이 사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공청회 또는 간담회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됨.

해설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공직자가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 **【외부강의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법 제10조 규율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사례

사례1

특정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업 할인 프로그램

Q. 놀이시설 A랜드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40%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위반이 아님. 특정직종 전체에 대해 기업 상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로 보아 제공 가능

해설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2 기부금 등 모집행위

Q. A주민자치센터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썰을 충정하고 모금을 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가?

A. 위반이 아님. 「결핵예방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금 등을 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됨.

해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결핵예방법 제25조 (모금 등)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썰 모금 등을 할 수 있음.
-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등은 크리스마스썰 모금 등에 협조하여야 함.

사례3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제재

Q. 건축허가를 진행중인 사업자 A가 건축허가 담당 공직자 B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을때, 공직자 B가 지체없이 신고, 반환·인도한 경우 공직자 B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 A도 제재대상에서 제외 되는가?

A. 제재 대상임.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별개로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별개로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됨.
- 이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액기준 이하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 ☞ 법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 ☞ 법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례4 협찬 제공의 요건

Q. 도청 내 문화 관련 부서에서 도민 문화행사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지역 문화단체로부터 경품 등 행사 물품을 협찬 받을 수 있는가?

A. 협찬 받을 수 있음.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일 경우 허용이 됨.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이 되며,
-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협찬이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할 것을 규정함.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 >

-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사례5 공식행사 인정여부

Q. 예산수립 등 현안사항 해결 목적으로 도의원 및 공직자등이 간담회 개최시 공식행사에 해당이 되는가?

A. 해당되지 않음. 간담회의 경우 공식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움.

해설

- 공식행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간담회의 경우, 통상 참석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간담회는 공식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움.

< 공식적 행사 판단 세부기준 >

○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사례6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의 무료제공

Q.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A. 법 위반이 아님. 공공기관 백서 등은 기관의 **홍보목적의 발간**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무료제공 하는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아님.

해설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공직자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 **【관련법령】**
 -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례7 기업의 홍보물 배부

Q. 연말에 금융기관에서 홍보용 다이어리 및 달력을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법 위반이 아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해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기념품(홍보용품) 판단기준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함

(가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p> <p>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p> <p>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장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p>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p>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별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p>11. 병역관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p> <p>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p> <p>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p> <p>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p> <p>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

<p>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p>1. 직무 참여 일시증지</p> <p>2. 직무 대리자의 지정</p> <p>3. 전보</p> <p>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p> <p>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p> <p>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p> <p>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p> <p>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p> <p>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p>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p>
<p>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p> <p>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p>	<p>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p> <p>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p>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p>	<p>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p> <p>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p> <p>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p> <p>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p> <p>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p> <p>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p>	

	<p>2. 수사기관의 조치</p> <p>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p> <p>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p>
	<p>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p> <p>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p> <p>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p> <p>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p> <p>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p> <p>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p> <p>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p>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의 일시 · 목적 · 유형 및 세부내용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별처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p>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 ·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p> <p>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p>	<p>제17조(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 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 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중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 ·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p>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 을 안 경우 <p>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p>	<p>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p>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실 · 부폐 ·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 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p> <p>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p> <p>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소재지</p> <p>다.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p> <p>3. 신고의 경위 및 이유</p> <p>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p> <p>5. 금품등의 반환 여부</p> <p>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p> <p>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p> <p>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폐·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p> <p>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	--

<p>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p>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p> <p>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 ·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 · 상담 · 접수 · 처리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 조사 및 자료의 수집 · 관리 · 분석 등 	<p>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p>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p>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p>
--	--

	<p>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p> <p>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p> <p>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	--

	<p>제13조(이첩 · 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p>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p>	<p>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p> <p>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p>

<p>을 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p>	
	<p>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p>
<p>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p>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p>

<p>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p>	<p>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p>	

<p>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p>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7></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p>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p>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p>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p>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p>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p>	

<p>의 별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기관장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p>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p>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p>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 처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 · 처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p>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 조사·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신분노출시 보호요청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044-200-7747~8)
-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됨

2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 »» 자진신고한 경우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벌·징계·과태료·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 또는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신고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보호해 드립니다.

»» 신고자,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의 예시

-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 ③ 전보, 직무재배치, 상여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
- ④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조치
- ⑤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⑥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등

»»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와 협조자가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을 원하는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요청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044-200-7747~8)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구
-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5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 협조자, 친족, 동거인이 물리적인 위협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조치의 종류

- 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② 일정기간 신변경호
- ③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변보호 요청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044-200-7747~8)
-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신고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신고 보상금 신청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전화상담 및 접수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044-200-7745,7743)

2

신고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한 공익증진 기여도에 따라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한 신고자 행동요령



1

부패신고 이전 단계

»»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직장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 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 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직장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직장내 전화·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 사실 등을 언급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부패신고 이후 단계

■ 신분이 밝혀지기 전

»»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소속기관·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분이 밝혀진 후**

»» **소속기관·부서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항상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조치를 주시하셔야 하며,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위원회 보호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속기관 부서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협조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에 보호상담 및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 행 일 : 2018년 5월

발 행 처 : 경기도 조사담당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전 화 : 031-8008-4984~7